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
4. 검토의견 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1월 26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이희배

#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서관 및 과학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나. 농협중앙회 등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(안 제10조의2).
- 다. 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을 조정하여 적용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함(안 제13조).
- 라.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함(안 제15조).

- 마.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변경하여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조정함(안 제17조).
- 바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사업시행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변경함(안 제18조).
- 사.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(구분지상권)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감면대상에 추가함(안 제21조).
- 아.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함(안 제23조).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세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행 시세(市稅)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